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합45949 판결 [주식 매매대금 등 청구]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황태규, 황예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승

담당변호사 유영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미소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8,080,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6. 4. 25. 분자, 유전자 진단기기 및 시약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1. 2. 22. 기준 기명식 보통주 44,767주, 상환전환우선주 16,109주를 발행한 회사이다.
- 2)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20. 1. 1.까지 C의 대표이사이었고, 2017. 10. 23.부터 2022. 4. 15.까지 및 2022. 9. 14.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 피고, C 사이의 투자계약

- 1) 원고는 2021. 2. 22. 피고 및 C와 사이에 원고를 '투자자', C를 '회사', 피고를 '이해관계인'으로 한 투자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하고, 원고, 피고, C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작성으로 체결한 약정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C가 발행하는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6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372,39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2021. 2. 23.경 C에 신주인수대금 999,867,150원(= 2,685주 × 1주당 372,390원)을 지급하여 위 무렵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2021. 2. 24. 기준 C의 발행주식의 총수 중 약 4.11%(= 원고 보유 주식 2,685주 / C가 발행한 주식 65,172주)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 3) 원고, 피고, C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피고와 C가 특정한 경영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로 하고(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9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이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회사'는 C를, '이해관계인'은 피고를, '투자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9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의 증감, 주식 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 회생신청, 파산신청,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수도,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4. 건당 전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자산총계의 10%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5.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6.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정의에 의함), 임직원,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함)과의 거래
7.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내외 회사 설립 또는 다른 회사의 50% 이상 지분 취득
8.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9.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제12조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회사의 주권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이하 "기업공개"라고 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가 기

업공개 요건을 사실상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 계약으로 인수한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9조를 위반하여 투자자의 동의 또는 협의 없이 각 호 사항을 진행한 경우

② 전항의 주식매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본건 주식 발행일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기로 한다.

1. 주식 인수 당시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한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식매매 대금 지급일까지 연복리 8%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단 1년 이내 기간에 주식매수가 이루어질 경우는 8%의 이율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

③ 본조의 주식매수청구는 매수청구 대상주식의 종류 및 수, 거래예정일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주식매수청구 서면이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도달한 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지체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제22조 (이해관계인의 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본인의 권한, 권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회사와 함께 본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C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동의 요청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부동의

1) C는 2022. 9. 14.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① 정관을 변경하여 C의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 및 회사의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안건, ②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 ③ E, 피고, F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④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하 ① 내지 ④ 안건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을 결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전인 2022.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안건을 통지하면서 동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9. 6. C에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C는 2022. 9. 14. 이 사건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하였다.

라. 원고의 주식매수청구

1) 원고는 2022. 10. 7.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C에게는 ‘위약벌 청구권 행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의 C에 대한 내용증명은 2022. 10. 11. 도달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내용증명은 같은 날 피고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마. 원고의 C에 대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

원고는 2023. 2. 10. C를 상대로 위약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41747호, 이하 위 제1심판결을 ‘관련 소송

제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40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함으로써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9조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분할 지급을 약속하였다. 위 2022. 10. 26.은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자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주식매매대금인 1,138,080,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27.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복리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1)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은 1주 1의결권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C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 2) 설령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안건에 대한 부동의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22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3) 원고의 주식매매대금청구는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 C는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한 사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하여

1)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1주 1의결권 원칙 및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1) 상법 제369조 제1항의 1주 1의결권의 원칙 등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다른 주주와 평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의 계약은 주주평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도 회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원고와 개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는 주주와 회사인 C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인 1주 1의결권의 원칙 등 주주평등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이라는 주장

(1) 법률행위 목적의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라거나 원고의 급부와 그 반대급부인 피고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C가 발행한 주식 60,876주 중 25,838주(42.44%)를 보유한 대주주였는데, 원고에게 C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함에 동의하는 등 다수주주가 소수주주인 원고에게 우월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등적 취급을 승인한 사실,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C의 사업 현황 및 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은 C의 유동성 확보와 자본증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등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거나 피고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에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은 유효하다.

2)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관하여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행사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권리행사가 사회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사회질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C는 2022. 4. 7. 원고에게 “(주)C와 상장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구주매각 동의 및 최대주주 변경 동의 요청의 건”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피고가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C의 최대주주가 피고에서

G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피고의 C 주식 매각 및 C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C는 위 공문을 발송하며 ‘최대주주의 구주매각 및 최대주주 변경의 동의서’와 ‘G과 피고 사이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이를 수신한 원고는 위 사항에 동의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2조에는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자자는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인 C 및 이해관계인인 피고로 하여금 기업공개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C가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양해각서 제1조 제2항에는 G와 피고가 C를 공동경영하고, G은 2명의 이사를 지정하고, 피고는 2명의 이사를 유임하게 하며, G과 피고가 공동대표이사를 1명씩 지명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양해각서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가 끝나면 C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의 이사는 G이 모두 지명하여 C 경영권 양수도를 완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즉, 피고가 C의 주식을 G에 매도하고 C의 최대주주를 G으로 변경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G이 C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최대주주의 구주매각 및 최대주주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④ 특히 이 사건 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변경,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은 위와 같은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최대주주의 구주매각 및 최대주주 변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와 C로 하여금 인수합병을 위한 위와 같은 후속절차에도 동의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C가 G과 인수합병하는 것이 C에 불이익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를 제외하고 C에 투자한 다른 주주인 회사들은 ‘최대주주의 구주매각 및 최대주주 변경’에 동의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 안건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아 C와 G의 인수합병은 회사인 C와 주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동의권을 부여한 취지가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경영사항에 대한 감시·감독 등 목적에서 부여한 것이지 원고가 원하는 대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 C가 G와 인수합병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C와 다른 전체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C의 인수합병을 위한 절차에 동의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이후에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한편, 원고는 ‘피고의 바이오 전문성과 경영능력만을 믿고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C의 향후 합병계획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나, 피고가 최대주주 변경과 대표이사 변경 또는 회사 경영의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하였기에 이를 믿고 동의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 직원의 진술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며 동의해달라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원고가 금융, 증권, 투자정보 개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을 생각해보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동의해주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⑦ 원고는 ‘피고가 C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반대하여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0. 1. 1. 이미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이전에도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만 피고는 2022. 4. 15.까지 C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C의 대표이사가 G 측 E로 변경된 2022. 9. 14. 이후에도 계속하여 C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사로 재직한 점, 2020. 10. 자 피고의 기업소개 자료와 2023. 2. 자 피고의 기업소개 자료 모두에 피고는 C의 공동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2023. 2. 자 피고의 기업소개 자료에 이전과 달리 ‘Acting CEO’라는 기재가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C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⑧ 원고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원고의 전무인 I은 C로부터 이 사건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그 이메일을 J(원고 감사), K, L에게 포워딩하면서 '회장님 아래와 같이 C에서 동의서 요청이 왔습니다. 핵심은 내용은 대표이사 변경, B의장 사내이사 중임입니다. 19조 주식매수선택권이 있고, 9조에 대한 서면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9조 9항에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B 의장 지분매각은 동의했고, 이번 대표이사 변경 건이 우리 지분을 연 8% 수익을 취하고 매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G와 C 합병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합병비율을 보고 지분매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이후 C로부터 받은 위 이메일과 본인이 J, K, L에게 보낸 위 이메일을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포워딩하면서 '아래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A가 동의하지 않고 이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원금과 보장수익(연 8%)를 받고자 할 경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원고는 C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시하며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전동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지출한 투자금을 돌려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의 차원에서 이 사건 안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⑨ 관련 소송 제1심판결은,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벌 청구에 관하여 '우월한 권한 또는 지위를 부여받은 소수주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등 그 권한행사로 당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참조)'는 법리를 근거로, C가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를 한 것을 권리남용으로 보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의 효력은 원고와 C 사이의 약정의 효력과 별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를 한 사실' 자체는 관련 소송 제1심판결에서와 동일한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제반사정 등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안건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고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권가희, 판사 오하나

1) 원고는 2024. 5. 2. 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을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의 동의권 부여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